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신대경

전화 033-769-4302 / 팩스 033-769-4642

보도자료

2020. 6. 30.(화)

제 목

교육부 진단평가를 방해한 A대학 교수들 최초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허위입학생 ‘밀어넣기’를 통해 교육부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수를 부풀려 제출한 원주지역 A대학 교수들 15명을 기소하였음
 - 진단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정원감축을 피하고, 국고를 지원 받기 위해 교수들이 가족, 지인 등을 허위입학시키고 등록금까지 대납한 뒤 교육부 평가 이후 일괄자퇴시킨 사실을 확인함
 - 일부 대학에서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범행으로, 검찰에서 최초로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함
- 교수들의 직위,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, 업무상 횡령으로 총장, 교학처장 등 교수 4명을 구공판하고, 학과장 등 교수 11명을 구약식하였음

1 피고인

- 총장 A, 교학처장 B, 학과장 C, D 등 총 15명

※ 이하 직위는 범행 당시 기준

2 공소사실의 요지

● 위계공무집행방해

- 교육부 진단평가의 중요 지표인 신입생 수를 부풀리기 위해 2018. 2.경 교수들의 가족, 지인 등 154명의 명의를 빌려 1인당 등록금 약 300만원을 대납하여 허위 입학시키고(일명 ‘밀어넣기’) 부풀린 신입생 수를 교육부에 제출, 위계로써 공무집행방해

※ 허위입학생 중에는 70세의 노인, 의사 등도 포함

● 업무상횡령

- ‘밀어넣기’에 이용되었다가 자퇴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2/3만 환불하여 결국 등록금을 대납한 교수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, 이를 보전해주고자 위 허위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교수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교비 9천여만원 업무상횡령

※ 교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, 다른 용도로 사용 즉시 횡령죄 성립

3 수사 경위

- ‘밀어넣기’ 범행이 교내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문제점을 비판한 일부 교수들의 내부 고발로 검찰 수사 개시
- 장기간의 계좌추적, 대학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6. 30. 총장 A 등 15명 기소 (4명 구공판, 11명 구약식)

4 수사 결과

- 장기간 계좌추적과 대학관계자 등 40명에 대한 조사 결과, 총장 A, 교학처장 B가 이 사건 범행을 지시·독려하고 각 학과장과 교수들도 범행 가담한 사실 확인

※ 조교 등 교내에서 약자 지위에 있는 직원에게도 ‘밀어넣기’ 가담 요구

- 대학에 다닐 의사가 전혀 없는 가족, 지인 등 총 154명의 등록금을 대납하여 입학시킨 뒤 자퇴시키고, 등록금 환불액과 장학금 명목의 돈을 위 허위입학생에게 지급한 뒤 교수들이 반환받은 사실 규명

<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개요>

- 진단평가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고, 적정규모를 유지케 할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음
 - 위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은 4단계(자율개선대학, 역량강화대학, 재정지원제한대학 I, II)로 구분되고, 국가지원금 및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, 정원 감축 여부에 차등 발생
 -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원이 최대 30%까지 감축되는 불이익이 있는바, A대학 교수들은 높은 등급을 받아 직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범행 가담
- ※ 지방 B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II로 선정된 뒤 폐교되기도 하였음

- 처분내역

- 학교 내 직위, '밀어내기'한 학생의 수 등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
- 총장·교학처장과 다수 인원을 '밀어내기'한 학과장 C, D 등 4명은 구공판, 그 밖에 학과장 E, F 등 11명은 구약식 ☒